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5-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선 및 반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43, 2025.01.14.)

2. 주요내용

-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식 개선
 - 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회 의원을 2명 이하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추천과 공모 방식 병행
 -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심사
- ☐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 강화
 - 심사위원회 심사 전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진행
 - 출장자(공무원 등 동행 포함), 방문기관 및 비용 등 통합 심사
 - 심사 후 출장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의결 원칙
 - 경미한 일정 변경, 항공료 소폭 변동 등 단순 변경 제외

□ 사후관리 강화

-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해당 보고서에 기재하여 보관
-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사유 발생 시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의결 요구

□ 정보공개 확대

-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한 출장보고서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 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 게재
- 징계 발생 시 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게시

□ 출장 내실화 및 비용지출 제한

- 출장 목적과 부합된 일정 수립, 가급적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 출장여비(일·식비), 운임(항공, 차량임차), 숙박대행, 통역 및 공적 목적 가이드 등 필요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비용 지출 가능
 - 취소수수료 지출 기준 별도 마련(국외여행 표준약관 등 적용)
- 출장자는(공무원 포함) 출장경비 외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 제한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년 7월 17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성동구 고산자로 266 (행당동), 성동구의회 의정팀

나. 문 의 처

○ 전 화: 02-2286-6452

○ 팩 스: 02-2286-5948

○ 이메일: yun0201@sd.go.kr